국가정책조정회의

공 개

#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대책

2014. 1. 16.

산업통상자원부

## 목 차
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추진방향 ····· 3

Ⅲ. 세부 추진과제 ····· 4

1. 제조단계 ····· 4

2. 충전·판매단계 ····· 5

3. 검사단계 ····· 7

4. 사용단계 ····· 8

Ⅳ. 향후계획 ····· 10

# Ⅰ. 추진배경

□ LP가스 관련 **인명피해** 사고가 잇달아 발생, 국민들의 불안감 가중

< 대구 LP가스 폭발사고('13.9.23) 원인 >

◇ LP가스 판매업체가 **노후용기를 사용**하여 **무허가 시설**에서 **불법충전중**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사고로 번져 대규모 인명(사망2, 부상11)·재산상 피해 발생

○ 배관망을 통해 공급하는 도시가스와는 달리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LP가스는 그 특성상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

*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72.4%를 차지

○ 언론도 노후·불량용기 유통 등 LP가스용기 안전관리 문제를 부각

□ LP가스용기 안전관리는 업무전반에 걸쳐 **불합리성**을 내포하고 있었으나, 사업규모의 영세성, 사업자간 이해대립으로 **미해결** 상태

○ (유통) 충전소, 무허가 판매소에서의 **불법충전** 성행, 용기 이력관리 부실화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어려움

○ (검사) **내압시험 누락**, 검사결과 관리체계 부재 등 검사업무 전반의 부실화, 용기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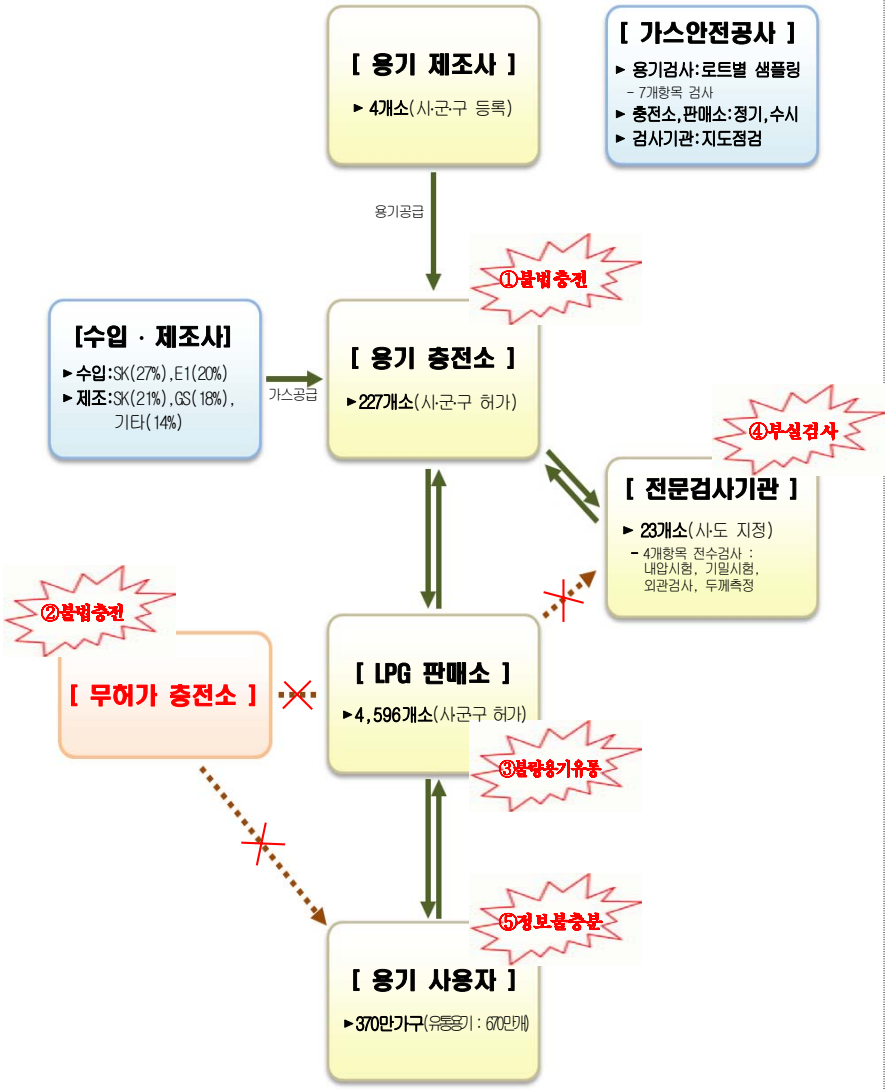
○ (사용) 유통기한 도래, 가스누출 등 용기 안전에 관한 **기초정보 불충분**

□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**그물망형**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**근절대책**을 수립·시행, 용기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

○ 유통단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용기 안전관리를 재설계하고,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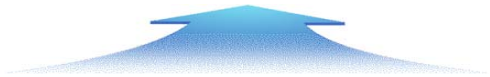


≪LP가스용기 유통체계 및 불법행위 유형≫



## Ⅱ. 추진방향

**비전** | LP가스용기 안전성 강화로 국민 행복시대 구현



**추진과제**

| 관리단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제조단계 | · 신규용기 제조기준 상향 조정<br>·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 |
| 충전·판매단계 | · 용기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<br>· 판매소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<br>· 폐기대상 용기 관리프로세스 마련 |
| 검사단계 | · 민간 전문검사기관 관리 철저<br>· 검사대상용기 기준 대폭 강화 |
| 사용단계 | ·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<br>· 불량용기에 대한 국민감시체계 구축<br>· 사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 |



## Ⅲ. 세부 추진과제

### 1. 제조단계

#### 1-1. 신규용기 제조기준 상향 조정

□ 제작용기 검사기준을 **국제수준**으로 대폭 강화 (기술기준, '14.상)

○ 설계단계검사시 국제기준에 준한 압력반복검사, 파열시험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용기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제고

* 신규용기 검사 항목수를 현행 9개에서 11개로 상향 조정(검사항목 2개 추가)
** 국제규격 ISO 22991, 미국 DOT 등 외국 규격에서는 실시 중

□ 용기 외면에 표식하는 페인트재질 내구성 보강 (고법[1] 고시, '14.상)

○ 유통기한(검사기간) 표식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방수 코팅·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**기능성 페인트**(예: 자동차보수용 우레탄도료) 사용 의무화

#### 1-2. 주기적 정밀검사 실시

□ 용기제조시설의 적합성 검사 정기적 실시 (고법 규칙, '14.상)

○ 최초로 생산된 용기 품질 수준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**적합성검사**(파괴적 방식)를 3년 주기로 실시

* 현행법에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만 적합성검사를 1회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후·마모된 설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최초로 제작된 용기품질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

□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**상시점검** 강화 ('14.상)

○ 제조업체(4개)에 상주인력을 파견, 제조공정, 내압검사 등 점검

1) 고압가스 안전관리법

## 2. 충전·판매단계

### 2-1. 용기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

□ ICT기술을 활용, LP가스용기에 대한 **'이력관리시스템'** 도입 (액법[2], '14.하)

○ (신규용기) 용기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체명, 제조일자, 용기소유자, 유통기한 등 기본정보를 용기 외면에 부착토록 하는 의무부과

○ (유통용기) 충전사업자의 경우, 검사기간이 도래한 용기에 대해 검사기관, 검사일,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를 입력토록 제도화

* 추적 이력관리가 곤란한 유통용기는 용기 각인표시, QR마크 부착 등 검토(업계요구)

□ 충전소의 불법 충전행위 원천 차단 (액법, '14.하)

○ 불량용기 충전, 미검사용기 유통 등을 충전사업자의 **금지행위** 유형으로 **규정**하고, 허가취소 등 처벌근거 마련 (석유사업법 준용)

* 현행법에는 충전소가 용기 검사기간을 확인하거나 안전점검 후 충전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는 등 명시적 금지 규정 및 직접적 처벌 근거 부재

□ 용기 **안전관리 업무위탁 활**성화 (액법, '14.하)

* 용기 구입단계에서는 용기 소유자가 충전 또는 판매사업자로 구분되고 있으나, 유통단계에서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고 충전·판매되고 있어 용기 안전관리에 어려움

○ 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서에 명시할 세부내역을 법령으로 규정 (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)

- (관리범위) 용기 검사신청, 불합격·유통기한 경과 용기 폐기처분
- (위탁비용) 산업부장관이 고시 형태로 적정수준(가이드라인)을 제시

* 현행 법령에는 용기안전관리 위탁을 허용하는 근거만 규정하고 안전관리범위나 비용수준 등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위탁업무 활성화에 걸림돌

○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충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보장

2)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

### 2-2. 판매소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

□ **판매소 간판** 기준 마련 및 용기 **판매·점검대장** 작성 추진 (액법, '14.하)

○ 허가받은 LPG판매소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판 표시 및 부착기준 마련

○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소비자에게 공급시, 미검용기 여부와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결과 작성과 함께 판매기록 보관 의무화

□ 용기 **운반차량**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**등록제** 도입 (고법 영, '14.상)

○ 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충전소에는 등록차량만 LP가스용기 적재·운반 허용 (현재 운반차량은 탱크로리와 벌크로리만 등록)

○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도록 운반차량의 도색을 표준화하고, 주택가 주차 등 운반기준 위반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내문 부착 의무화

* 현재 운반차량은 깃발, 상호표기만 하고 있어 쉽게 식별이 불가한 상황

### 2-3. 폐기대상 용기에 대한 관리프로세스 마련

□ 폐기대상 용기 관리체계 개선 (고법, '14.하)

○ 현재 충전소·판매소·검사기관이 각자 수행하는 **폐기업무**를 검사기관으로 **일원화**하고, 매분기마다 가스안전공사에 결과 통보

○ 불법유통 목적의 폐기대상 용기 보관행위를 충전·판매사업자에 대한 금지유형으로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

* 현재 폐기절차 규정이 없어 용기 잔류가스에 대한 안전처리 문제점 등 발생

## 3. 사용중인 용기 검사단계

### 3-1. 민간 전문검사기관 관리 철저

□ 내압시험검사 전과정에 대한 **실시간 모니터링** (고법 규칙, '14.상)

○ 용기 안전과 밀접한 내압시험 등 주요 검사공정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확인시스템 구축 (가스안전공사 주관)

○ 검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유번호 부여, 용기각인 추진

* 현행은 검사기관의 기호(Symbol)만 용기에 표시, 마모 등으로 인해 식별 곤란

○ 주요 검사항목인 '내압시험' 측정기준 강화방안 검토

□ 검사기관의 시설 적합성, 검사공정 심사 등 정기적 실시 (고법, '14.하)

○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**정기검사**제도(3년 주기) 도입

○ 위법한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개선권고 없이 바로 행정처분 부과

□ 민간 전문검사기관 감독·단속 강화로 부실검사 원천 차단 ('14.상)

○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위해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상주입회 점검을 강화하고 주말·야간시간대에는 불시단속 실시

### 3-2. 검사대상 용기기준 대폭 강화

□ 유통용기 안전성 검사기준 강화 (기술기준, '14.상)

○ 사용기간이 26년미만 용기는 검사기준을 합격할 경우에만 사용 허용

○ **26년경과 용기**는 용기외면에 부식방지 도장, 용기두께 측정 의무화 등 강화된 검사기준 합격시 사용 허용

* 용기가 넘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차단을 위한 '수직도 검사' 항목 신설



## 4. 소비·사용단계

### 4-1. 유통용기 일제점검 실시

□ 소비자가 사용중인 유통용기에 대한 **안전성 점검** 실시 ('14.상)

○ 지자체에서 관할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유통용기 실태 점검을 전면실시하고, 적발된 불량용기는 전량 회수·폐기처분

* 용기 회수기간이 도래하는 때에 안전성을 일제확인, 불량용기 발견시 즉각 폐기

□ 용기 외부에 소비자 **안전정보** 부착 (액법 규칙, '14.상)

○ 소비자가 용기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용기 외면에 스티커로 부착 (예시: 사용연한 도래기간, 재검사기일, 긴급연락처)

### 4-2. 국민적 감시체계 구축

□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LP가스 설치시 **완성검사** 의무화 (액법 규칙, '14.상)

○ 소규모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 대상을 이발소, 미장원, PC방, 세탁소 등으로 확대

* 현재 완성검사 대상에 1종 보호시설(학교, 유치원 등), 음식점, 주거용 건물 등의 시설에 한정되어 소규모 비주거용 시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

□ 불량 LP가스용기 '대국민 **신고포상제**' 운영 ('14.상)

○ 불량 LP 가스용기 유통사업자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 실시

* 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전국 27개 지역본부(지사)에서 신고 접수

○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, 지자체 홈페이지, 가스전문지 등에 홍보

□ 안실련*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민관 **감시체계** 구축 ('14.상)

○ 국민 안전을 위해 LP가스 안전 홍보, 불량 용기 신고 캠페인 전개

*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('96년 설립) : 안전문화 확산, 안전관련 법·제도개선 건의

## 4-3. 사업자 불법행위 처벌 강화

□ 충전·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적 **행정처분** 강화 (액법, '14.하)

○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등 **대형사고**를 유발한 사업자, 불법충전하여 판매한 사업자는 **1회 위반시**에도 허가를 취소(**One Strike Out**)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

< 현행규정 및 타법사례 >

◇ 현행규정 :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여도 1회 위반시 사업정지 10일에 불과

◇ 타법사례 :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등은 1회 위반시도 영업허가취소

□ **사업정지** 기간 및 **과징금** 상향 조정 (액법, '14.하)

○ 사업정지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

* 타법사례 : 석유판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

○ 사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금액도 2배 상향(2천→4천만원)하고, 산정기준을 매출액 방식에서 정액 방식으로 변경

* 현재 매출액 방식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매우 낮고, 사업자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확인이 어려움(연간매출액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3만원)

□ 경찰, 지자체, 가스안전공사 등과 **'합동단속'** 등 공조 강화 ('14.상)

○ 산업부 중심으로 경찰청, 17개 시도, 가스안전공사간 협업체계를 구축, 불법 충전행위, 폐기대상 및 미검사 용기 유통 등 집중 단속

* 효과적 단속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대해 LP가스 시설에 대한 독자적 조사권 부여 검토 (현재는 산업부나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조사)



# Ⅳ. 향후계획

## 갈등관리

□ 대책 수립단계부터 업계 간담회, 민관 워킹그룹 회의,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, 향후 입법과정 중 일부 업계에서 **문제제기** 가능

○ 용기안전관리 강화내용, 책임성 제고에 대해서는 원칙 찬성

○ 다만, 충전소 중심의 용기관리 방침에 대해 지방소재 판매업계 이견 표출

□ 향후 LPG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「**LP가스 상생협력 포럼**」을 상설화하여 대책 추진과정에서의 수용성을 제고

○ 입법과정, 세부시행 방안 수립시 타당한 업계의견은 반영

○ 영세 LPG사업자에 대한 재정·기술지원, 불필요 규제 발굴·개선

□ **비용수반 과제**에 대한 **지원** 등을 통해 **속도감** 있는 대책 추진

○ 하위법령(시행령, 규칙)은 상반기 완료, 법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제출

○ 시설개선 등 비용수반 과제는 가스안전 융자금 등 지원

* 융자금('14년 계획 120억원) : 충전·판매·검사기관 시설개선, 용기 구입비 지원

* R&D('14년 계획 26억원) : 용기제조·검사장비 개발, 용기이력관리시스템

## 대국민 홍보

□ 금번 대책이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널리 알려 국민 불안을 조기 해소하고, LPG 사업자의 정책 순응을 유도

□ 정부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**인포그래픽** 제작, **온-오프라인** 홍보

○ 43개 부·처·청·위원회 SNS채널 연계, 정부보유매체(100여개) 협업 추진

○ 전국 시도 및 산업부 유관기관 홍보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공동 홍보

○ 안실련 등 시민단체 등을 통해 주부대상 가스안전 캠페인 전개